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제1장 개요	1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2
제2장 검토의견	13
1. 세입: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임의채납액 축소 요	13
2.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400) :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19
3.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25
4.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31
5. 공정거래지원(7031-300)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체계화 필요	37
6. 공정거래지원(7031-300)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42
7. 정보화 기반확충(정보화)(7032-501) :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조기구축 필요 ..	47
8.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03) : 데이터포털 외부 활용 제고 필요	51
9. 공정거래위원회 청년관련 제도 내실화 필요	56
(1) 공정거래지원(7031-300) : 청년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할당 필요	56
(2) 대외활동 강화(1231-311) : 2030자문단 역할 정립 필요	59

(3) 총액인건비성 인건비(7001-100) : 청년보좌역 역할 정립 필요 ...	63
10.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66
(1)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67
(2)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4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 관련 검토 필요	78

제1장 개요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92억 6,400만원(19.8%) 증가한 5,394억 2,600만원임.

- 세부내역을 보면, 과징금·위약금·가산금·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상이전수입이 5,394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이자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감(△)	
			(B-A)	(B-A)/A
<u>재산수입</u>	6	6	-	-
- 기타재산이자	6	6	-	-
<u>경상이전수입</u>	450,155	539,420	89,264	19.8
- 과징금 및 과태료	448,262	537,516	89,254	19.9
- 위약금	1	1	-	-
- 가산금	473	496	23	4.8
- 기타경상이전수입	1,420	1,407	△13	△1.0
합 계	450,161	539,426	89,264	19.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안

(1) 개 요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633억 9,2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9억 6,300만원(3.1%)이 증가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 건 비	53,650	56,162	2,502	4.7
□ 기 본 경 비	8,921	8,949	28	0.3
□ 사 업 비	95,858	98,281	2,423	2.5
○ 계속사업	31,274	31,828	554	1.7
(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015	8.6
(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854	1.6
○ 신규사업	-	-	-	-
○ 완료사업	-	-	-	-
합 계	158,429	163,392	4,963	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 2025년 중점 투자 분야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 쟁점이 복잡·다양한 소송사건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한국소비자원 출연예산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조속한 대응을 위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 예산 4억 4,800만원과 결혼서비스 분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 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27.2월 시행)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심의 문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심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송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선불식할부거래상품(상조·적립식 여행 등)의 가입·대금납부·이용 등 전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 예산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주요 예산구조 개편 사항

- ① 신규사업 : 해당 없음
- ② 사업명칭 변경 : 해당 없음
- ③ 사업 이동 : 해당 없음

(2) 인건비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56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24년 예산인 536억 6,500만원보다 25억 200만원(4.7%)이 증액된 수준임.
- 인건비의 예산편성인원은 2024년의 652명 대비 4명이 감소한 649명으로, 직제상 정원 649명, 별도정원 86명, 기타직 공무원 11명(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 6명)을 각각 반영하였음
- 2025년도 보수(110-01목) 예산안은 551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4%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안은 5억 7,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32.7%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연가보상비(110-05목) 예산안은 4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0%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건비	53,650	56,152	2,502	4.7
- 보수(110-01)	52,820	55,157	2,337	4.4
- 기타직보수(110-02)	431	572	141	32.7
- 연가보상비(110-05)	399	423	24	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기본경비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800만원(0.3%)이 증액된 89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B-A)/A
□ 기본경비 합계	8,921	8,949	28	0.3
- 인건비(110)	1,091	1,062	△ 29	△ 2.7
- 운영비(210)	3,687	3753	66	1.8
- 여비(220)	1,019	1028	9	0.9
- 업무추진비(240)	381	396	15	3.9
- 직무수행경비(250)	1,770	1770	0	0.0
- 보전금(310)	20	22	2	10.0
- 민간이전(320)	179	180	1	0.6
- 건설비(420)	454	311	△ 143	△ 31.5
- 유형자산(430)	320	156	△ 164	△ 51.3
- 무형자산(440)	0	271	271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 기본경비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본부 조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신규 관사임차를 위한 무형자산 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4)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58,366	158,429	163,392	4,963	3.1
【일반회계】	158,366	158,429	163,392	4,963	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58,366	158,429	158,429	164,791	163,392	4,963	3.1
7001 인건비	51,419	53,650	53,650	56,152	56,152	2,502	4.7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001-100)	51,419	53,650	53,650	56,162	56,162	2,502	4.7
7011 기본경비	9,341	8,921	8,921	8,949	8,949	28	0.3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3,082	3,207	3,207	3,316	3,316	109	3.4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66	72	72	74	74	2	2.8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2)	34	66	66	51	51	△15	△22.7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3)	19	26	26	26	26	0	0.0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0	17	17	20	20	3	17.6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18	20	20	20	20	0	0.0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6)	26	20	20	20	20	0	0.0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2	83	83	85	85	2	2.4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8)	20	23	23	23	23	0	0.0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9)	268	280	280	281	281	1	0.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0)	111	90	90	92	92	2	2.2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1)	74	70	70	70	70	0	0.0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2)	66	59	59	59	59	0	0.0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3)	65	56	56	56	56	0	0.0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4)	62	58	58	60	60	2	3.4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5)	27	27	27	27	27	0	0.0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0)	1,827	1,552	1,552	1,360	1,360	△192	△12.4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1)	438	514	514	325	325	△189	△36.8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2)	541	730	730	716	716	△14	△1.9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3)	408	371	371	376	376	5	1.3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70	175	175	198	198	23	13.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5)	143	145	145	145	145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6)	84	119	119	119	119	-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7)	102	132	132	138	138	6	4.5
기업협력정책관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8)	98	80	80	80	80	-	-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9)	686	199	199	231	231	32	16.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0)	484	218	218	211	211	△7	△3.2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1)	71	95	95	348	348	253	266.3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2)	77	87	87	87	87	-	-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3)	75	85	85	81	81	△4	△4.7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4)	117	134	134	136	136	2	1.5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5)	101	111	111	118	118	7	6.3
7031 행정지원	6,380	6,829	6,829	7,284	7,109	280	4.1
공정거래지원(7031-300)	811	1,389	1,389	1,181	1,157	△232	△16.7
행정소송수행(7031-301)	3,278	3,286	3,286	3,886	3,886	600	18.3
전산운영경비(7031-302)	2,291	2,154	2,154	2,217	2,066	△88	△4.1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7032 공정위정보화	7,833	4,959	4,959	5,372	4,746	△213	△4.3
정보화기반확충(7032-501)	2,658	3,472	3,472	3,717	3,259	△213	△6.1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5,175	1,487	1,487	1,655	1,487	-	-
1231 선진 경쟁정책 추진	2,234	1,790	1,790	2,329	1,955	165	9.2
정책연구개발(1231-310)	359	349	349	349	289	△60	△17.2
대외활동 강화(1231-311)	445	394	394	700	626	232	58.9
개도국기술지원(1231-312)	64	78	78	79	79	1	1.3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1231-503)	1,366	969	969	1,201	961	△8	△0.8
1241 카르텔대응강화	767	741	741	842	842	101	13.6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767	741	741	842	842	101	13.6
125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5,677	5,331	5,331	5,655	5,557	226	4.2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3,695	3,320	3,320	3,470	3,470	150	4.5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360	370	370	417	402	32	8.6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1251-332)	1,622	1,641	1,641	1,768	1,685	44	2.7
1261 시장구조개선	536	642	642	675	629	△13	△2.0
경쟁제한 규제개선(1261-340)	536	642	642	675	629	△13	△2.0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657	11,742	11,742	12,757	12,757	1,015	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11,657	11,742	11,742	12,757	12,757	1,015	8.6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435	3,313	3,313	3,227	3,219	△94	△2.8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31-400)	1,461	2,326	2,326	1,726	1,718	△608	△26.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974	987	987	1,501	1,501	514	52.1
143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159	1,389	1,389	1,792	1,792	403	29.0
선진소비자정책추진(1431-600)	1,159	1,389	1,389	1,792	1,792	403	29.0
1441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2,748	1,234	1,234	1,234	1,234	-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2,748	1,234	1,234	1,234	1,234	-	-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 운영	5,327	5,046	5,046	4,827	4,755	△291	△5.8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3,561	3,628	3,628	3,527	3,527	△101	△2.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1,766	1,418	1,418	1,300	1,228	△190	△13.4
1461 한국소비자원 출연	50,853	52,842	52,842	53,696	53,696	854	1.6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50,853	52,842	52,842	53,696	53,696	854	1.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설정하고,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가지 전략목표(‘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12개로 일반재정 10개, 정보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 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4	12	10	-	2
비율(%)	-	-	100	83.3	-	1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번호	비고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쟁촉진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Ⅰ-1	
	(4) 카르텔대응강화	Ⅰ-1	
	(5) 시장구조개선	Ⅰ-1	
프로그램목표 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공정거래 행정지원	(1) 행정지원	Ⅰ-2	
	(2) 공정위 정보화	Ⅰ-2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전략목표 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 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Ⅱ-1	
전략목표 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소비자후생 증진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Ⅲ-1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Ⅲ-1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Ⅲ-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포함
	(4) 한국소비자원 출연	Ⅲ-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가율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63,009	63,009	65,887	65,813	4.4
<일반회계>	63,009	63,009	65,887	65,813	4.4
행정소송 수행 (7031-301)	3,286	3,286	3,886	3,886	18.2
대외활동강화 (1231-311)	394	394	700	626	58.8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791	791	842	842	6.4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3,320	3,320	3,470	3,470	4.5
건전한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987	987	1,501	1,501	52.1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1431-600)	1,389	1,389	1,792	1,792	29.0
한국소비자원 출연 (1461-630)	52,842	52,842	53,696	53,696	1.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검토의견

1. 세입: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임의 체납액 축소 필요

가. 세입내역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및 조사 방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원이고,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과되는 금원으로, 과태료과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임.
- ‘가산금’은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상의 제재적 성격을 지는 금전부담임.
- 2025년 과태료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27억 5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025년도 과징금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4,455억 5,700만원 대비 892억 5,400만원(19.9%) 증액한 5,34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가산금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4억 7,300만원 대비 2,300만원(4.8%) 증액한 4억 9,600만원 편성함.

<2025년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2,165	2,705	2,705	-	-
과징금	552,104	445,557	534,811	89,254	19.9
가산금	326	473	496	23	4.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과징금 예산안은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에서 ‘최근 5개년도 환급액 중 최고/최저 수납액을 제외한 3개년도 평균 환급액’을 제외하고 예산조정 증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과태료와 가산금 예산안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수납액에 예산조정 증가분을 고려하여 결정함.

□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3년에 줄어들었던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2024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수납률은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각각 17.3%, 15.4%, 0.5%에 불과함¹⁾.

<최근 4년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과태료	'21	2,877	2,877	5,150	3,474	120.8	67.5	1,676	-
	'22	1,887	1,887	3,733	1,976	104.7	52.9	1,757	-
	'23	2,665	2,665	4,031	2,165	81.2	53.7	1,866	-
	'24.8	2,705	2,705	2,401	416	15.3	17.3	1,985	-

1)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로 인한 미수납금액이 총 4,347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2.2%를 차지하여 수납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과징금	'21	394,884	394,884	1,313,976	785,931	199.0	59.8	527,683	361
	'22	387,907	387,907	1,203,120	669,885	172.7	55.7	533,030	204
	'23	417,067	417,067	837,557	552,104	132.4	65.9	285,151	302
	'24.8.	445,557	445,557	719,050	110,980	24.9	15.4	608,069	-
가산금	'21	4,015	4,015	10,194	193	4.9	1.9	10,001	-
	'22	391	391	10,645	653	167	6.1	9,992	-
	'23	415	415	10,245	326	78.5	3.2	9,919	-
	'24.8.	473	473	9,963	53	11.2	0.5	9,909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태료, 과징금의 미수납액의 추세와 별개로 임의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임의체납액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 미도래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징수 유예와 달리 정당한 미수납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수 활동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임.

<과태료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 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체납
2021	금액	1,676	231	-	1,445
	건수	532	34	-	497
2022	금액	1,757	121	-	1,635
	건수	579	31	-	548
2023	금액	1,865	116	-	1,749
	건수	596	6	-	590
2024. 8.	금액	1,985	18	-	1,967
	건수	716	5	-	7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 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채납
2021	금액	527,682	475,644	8,370	43,668
	건수	487	290	14	183
2022	금액	533,030	431,013	37,263	64,754
	건수	555	271	65	219
2023	금액	285,151	177,679	29,465	78,006
	건수	532	269	31	232
2024. 8.	금액	608,070	341,427	185,128	81,515
	건수	748	407	100	2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산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수납액	193	653	326	53
미수납액*	10,001	9,992	9,919	9,909

* 미수납액은 누적 금액이며, 과징금·과태료 채납액(현재 미납) 관련 금액이 대부분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채납의 주된 사유로 2024년 10월 말 기준 과징금 채납자 122개사 중 104개사(85.2%)는 폐업, 해산, 청산 중이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 및 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은닉재산을 통한 납부의무의 회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채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자압류시스템²⁾을 통해 예금

2)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과징금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징수권³⁾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채권인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체납의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⁴⁾이므로, 공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4) 2024년 8월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5년을 경과한 과태료의 체납액은 전체의 45% 이상(과징금의 경우는 30% 이상)임.

정거래위원회는 징수실적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임의채납액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 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 채납액의 채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채납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과징금	15,680	15,908	14,105	6,326	2,313	20,247	6,936	81,515
과태료	262	141	120	224	332	830	58	1,9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징수활동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징수활동(건)					징수실적	
	납부 독촉 등	재산 조회	징수 조사	압류	계	건수	수납액
2021	122	21	-	20	163	21	140
2022	134	320	-	27	481	33	55
2023	80	2,010	73	75	2,238	49	61
2024. 8.	144	1,699	15	17	1,731	23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징수활동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징수활동(건)					징수실적	
	납부 독촉 등	재산 조회	징수 조사	압류	계	건수	수납액
2021	284	308	65	70	727	129	9,556
2022	387	352	30	55	824	160	27,631
2023	129	939	20	41	1,129	169	8,742
2024. 8.	25	496	10	26	557	143	6,441

* 가산금은 과징금·과태료 채납액 납부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한 징수활동은 과징금·과태료 채납액에 대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400)

: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하도급 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00만원(△26.1%) 감소한 17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461	2,326	1,718	△608	△26.1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299	1,652	1,551	△101	△6.1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	62	574	62	△512	△89.2
· 공시위탁 운영	100	100	105	5	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00만원(6.1%) 감소한 1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 편성됨.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한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⁵⁾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북 발간, 발표회 및 간담회 실시, 광고·홍보 등에 1억 2,600만원, 연동지원본부⁶⁾ 운영 지원에 2억 2,400만원 등 총 3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⑩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3년 10월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

억 5,000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한 1,600만원은 연동제 광고를 위한 것임.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금액	상세 내역
· 일반수용비	27,820	- 우수사례발표집 2,720 - 연동 가이드북 4,600 - 발표회 및 간담회 참석수당 4,500 - 연동제 광고 16,000
· 임차료	22,500	- 간담회 회의실 임차 22,500
· 일반용역비	73,000	- 연동제 홍보 73,000
· 국내여비	2,523	- 기업간담회 여비 2,523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224,000	- 연동지원본부 운영 224,000
합 계	349,84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에 홍보영상물 등의 제작부터 광고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디오, 택시·버스 광고를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유튜브, 라디오, 지하철 옥외 광고는 2024년과 동일하게 외주용역 방식으로 진행하되, 택시·버스 광고는 자체 제작한 영상을 광고 게재하는 것에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 그런데, 「하도급법」 제3조의7)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7제5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홍보 사업은 하도급연동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임.

〈연동지원본부 현황〉

1. 개요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23. 10. 20.)
- 조정원은 연동지원본부로서 상담서비스 제공, 연동제 설명 및 교육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활동 전개
2. 구성현황
□ 하도급대금연동지원팀 설립을 통해 연동지원본부 업무를 담당(관리자 1인, 실무 인력 5인)
3. 주요 업무내용
□ 교육
- (설명회) 주요 원사업자·개별 원사업자 및 협력사·사업자단체 회원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간담회) 공정위-조정원 합동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상담) 연동제 개념, 적용 대상, 연동제 해당 여부, 연동계약 체결방법 등 연동제 전반에 대한 유·무선 상담서비스 상시 제공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
 - 외부 전문 가격조사기관과 협약체결 후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 ☐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 구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동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홍보 사업은 연동지원 본부의 운영비 산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년 연동지원본부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금 액
연동제 관련 상담 및 교육 전문인력(변호사) 상용임금	50
연동제 상담 사례집 발간	5
법무법인 연계 연동제 자문 의견서 의뢰	10
연동제 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 업무추진비	4
연동제 관련 업무(설명회, 교육, 간담회 등) 출장비용	7
연동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10
연동제 원가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30
외부 전문 가격조사기관 연계 기준지표 컨설팅 지원	28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12

세부내용	금 액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전문상담실 임차료	30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전문상담실 관리용역비	18
합 계	204
부가가치세(10%)	20
총 계	22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조기안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법령에서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해당 예산은 법령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운영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3.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400만원(52.1%) 증가한 15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frac{(B-A)}{A}$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4	987	1,501	514	52.1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개선	673	678	1,192	514	75.8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302	305	305	-	-
· 해외상생협력사례 조사	-	4	4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400만원 증액된 1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편성 내역>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3억 8,800만원(일반연구비)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웹 기안기: 7,100만원(자산취득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5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 가맹정보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축된 시스템임.
- 이후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업무는 2012년, 2018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10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⁸⁾.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사용해온 가맹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⁹⁾.

<가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혁>

연도	고도화 사업 내용	소요예산(천원)
2008	□ 시스템 최초 구축	51,000
2016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재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 정보공개서 온라인 등록 및 심사 시스템 구축 ○ 등록된 정보공개서 이력 및 현황 조회 ○ 가맹희망+(플러스) 플랫폼 개발 - 정보공개서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 정보 - 가맹사업 수준평가정보*, 상권분석시스템정보* 제공 ○ 장비 이중화 (서버 추가 설치)	500,000
2019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일부 기능개선 ○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50,350
2020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 온라인 서면실태조사 기능 도입 ○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	450,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9) 예를 들면 변경등록 신청 시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입력 단계에서 이미 심사가 완료된 정보도 수기로 재입력하고 있고(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등을 입력할 때 기 심사된 데이터도 수기로 재입력), 현 시스템에서는 통계 도출 기능이 없어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통계를 수작업으로 추출·관리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제공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의 기능을 연결·연계¹⁰⁾하여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음.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주요 기능>

(1)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단계

-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구축: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입력 시 전년도에 심사 완료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 구현

(2)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단계

- 연계기안 시스템 구축: 등록 실무 처리 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 웹 기안기 설치: 시스템 업무를 Non-Activ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전자 통지 시스템 구축: 등록 관련 통지문을 시스템 상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3)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단계

- 정보공개서 관련 과태료 관리 기능 구축
- 정보공개서 통계 관리 기능 구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가맹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 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10)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실무 처리가 완료되면 온나라 연계기안을 자동 생성하고, 결재 결과가 실무 처리 시스템에 반영되는 연계기안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현재는 등록 실무 처리 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정보공개서 보완요청, 심사불필요, 등록취소, 등록거부, 등록완료, 정보공개서 공개 통지 시 실무 처리와 결재가 별도로 이루어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¹¹⁾¹²⁾, 관련 통지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등록 알림을 보내는 등 통지의 전산화 과정에서 확인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³⁾.

또한, 법령에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통지문을 심사 담당자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우편이 도달하는 기간동안 심사가 추가로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추정함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14) 법령상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례 다수 존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시스템의 개선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4.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은 사업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운영,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편성예산 13억 8,900만원 대비 4억 300만원(29.0%) 증액된 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6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소비자보호제도 운영 예산이 소비자의 날 30주년 행사 등에 따라 2024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5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159	1,389	1,792	403	29.0
· 소비자의날 행사	45	43	83	40	93.0
·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0	11	11	0	0.0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39	40	41	1	2.5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40	40	40	0	0.0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151	150	150	0	0.0
·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40	160	40	△120	△75.0
· 표준약관 교육	11	11	11	0	0.0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3	29	29	0	0.0
·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80	181	181	0	0.0
·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45	50	50	0	0.0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90	100	-	-	순감
·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	60	61	61	0	0.0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 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0	0.0
·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20	40	40	0	0.0
·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187	189	189	0	0.0
·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1	56	56	0	0.0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8	154	76	△78	△50.6
·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	75	40	40	0	0.0
·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 개 데이터분석 고도화	9	9	9	0	0.0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 공 플랫폼 구축	-	-	660	660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6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결혼 및 적립식 여행 등을 위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및 재화 등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 수 및 가입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등록업체 수	92개	84개	75개	73개	79개
가입자 수	560만명	636만명	684만명	729만명	833만명
선수금	52,664억원	58,838억원	66,649억원	74,761억원	83,89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합계
폐업업체 수	16개사	41개사	8개사	0개사	3개사	3개사	1개사	72개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동 사업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연구비 6억 6,000만원이 편성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에 일반연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ISP를 완료하였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해당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 (안)>

소비자	사업자	정부(공정위·지자체)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확인 ○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 시장상황·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	○ 경영·재무정보 제출·관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관리 ○ 선수금 등 정보 제출·관리	○ 시장 현황·통계 관리 ○ 법 위반내역 관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21대 국회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72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행법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등의 정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및 제36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의 정보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핵심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서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또는 예치금의 정보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법률에 정보 수집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호상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에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약 50%에 불과하며, 그 외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관련 정보는 사업자, 은행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통합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공정거래지원(7031-300)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체계화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4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232	△16.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811	1,389	1,157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 회의록 작성용역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건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력별·부서별 맞춤형 조사 교육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024년 신설된 사업임. 2024년에는 당해 사업에 총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1억 1,58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2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감액된 예산은 주로 단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에 관한 일반용역비(2억 4,000만원)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세부내용>

(단위: 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35,600	11,580
세부내용	○ 일반수용비(210-01) : 10,500 가. 전문교육 운영 - 10회×1,050=10,500	○ 일반수용비(210-01) : 10,500 가. 전문교육 운영 - 1,050×10회
	○ 일반용역비(210-14) : 24,000 가.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 - 3,000×8개=24,000	
	○ 국내여비(220-01) : 1,100 가. 교육출장여비 - 25,000원×40명×7회=700 나. 기타 업무협의 출장 - 72,000원×7명×8회=400	○ 국내여비(220-01) : 1,080 가. 외부위탁 전문교육 출장여비 - 90,000원×12명×10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조치 등 처

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술면담에 관한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을 입문·일반·고급의 세 단계로 나누어 특정시기(4·5월)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¹⁵⁾

□ 다만, 고급과정의 교육은 2회의 교육만이 예정되어 중기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사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일정을 특정시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분기·반기 단위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교육내용 및 일정(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 문				3 회								
일 반				2 회	3 회							
고 급					2 회							

① 입문과정 - 조사대상자 및 팀원간 소통 능력, 기본적인 조사기법

1 일 차	진술조사의 이해	의사소통의 이해	피조사자 파악하기
2 일 차	의사소통 기법	조사준비	조사프로세스와 협동
3 일 차	질문유형과 기법	조사시나리오 실습	
4 일 차	사례분석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사례	

15) 2024년도에는 10월~11월 중 교육을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음.

② 일반과정 - 조사기법 적용·활용, 진술 진위 파악 역량 교육

1 일 차	인지면담 프로토콜	사례분석 실습	성격 프로파일링
2 일 차	면담기법	면담기법 실습	
3 일 차	기억과 진술	진위판단	진술조사
4 일 차	사례학습	경찰수사 사례 및 노하우	

③ 고급과정 - 조사 통솔·전략제시, 조사대상 이해 및 협상·갈등 조정 역량 교육

1 일 차	인지면담 프로토콜	진술조사 체계 및 절차	
2 일 차	협상기법	협상기법 실습	
3 일 차	성격프로파일링	소통과 갈등관리	사례학습
4 일 차	사례분석	경찰수사 사례 및 노하우	

□ 특히, 영국의 글로벌 경쟁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는 2024년 국제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5점 만점에 4.5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도 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22.3개월, 독과점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56개월에 이르러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¹⁶⁾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효율적인 사건 조사·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사공무원 자격제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국세청은 「국세청 인사관리규정」¹⁷⁾

16)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survey/rating-enforcement/2024/article/koreas-fair-trade-commission>

17)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으로 회계실무(2급)과 일반조사요원 자격을 지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및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과목>

구분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과목	재무회계	법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원가관리회계	실무 (종합소득세 경정·신고실무, 조정계산서, 법인세결의서, 조사사무처리규정)

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49조(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 ① 국세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계실무 2급과 일반조사요원을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으로 지정하며, 이는 세무직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필수자격은 국세공무원 임용일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전입일로부터 회계실무 2급은 3년, 일반조사요원은 6년(출산휴가와 연계한 3월 이상의 육아휴직, 6월 이상의 휴직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외 파견 근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6. 공정거래지원(7031-300)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혁신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 역량 제고, 공정거래정책 홍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 (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232	△16.7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5	0.9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1	△0.6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240	△67.4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4	1.5
· 회의록 작성	50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대학(원)생들의 경연대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 경제현상을 접목하여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사업임.

○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2020년을 제외(코로나19로 미개최)하고 200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10년간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75	75	35	35	34	75	72	73	71	71
집행	71	74	34	35	34	-	71	73	69	69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편성되었던 입상팀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행사 진행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비용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편성(2,000만원 → 5,500만원)하였음.

<2025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예산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일반용역비(210-14) : 71,000천원 ○ 심사위원 사례금: 4,000천원 ○ 입상팀 상금: 35,000천원(입상순위별로 차등지급) ○ 인건비, 자료 유인비 및 행사용품 구입 등: 8,000천원 ○ 행사장·숙소 및 장비 임차료: 8,000천원 ○ 참가자 숙소, 중식 등: 4,000천원 ○ 대행료: 6,000천원 ○ 부가세 등: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1,000천원 ○ 심사위원 사례금: 4,000천원 ○ 인건비, 자료 유인비 및 행사용품 구입 등: 17,000천원 ○ 행사장·숙소 및 장비 임차료: 18,000천원 ○ 참가자 숙소, 중식 등: 20,000천원 ○ 대행료: 6,000천원 ○ 부가세 등: 6,000천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의 공정위 지원 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하루 개최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본선 참가 팀 수의 제한이 있어 2025년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는 입상팀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대회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4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행사 개요>

- ☐ (개요) 모의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가상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 보는 경연대회로서, 경연은 실제 공정위 심의와 유사하게 범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측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

☐ (대회 개최) 2024. 8. 23.(금),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

☐ (참가팀) 역대 최다인 31개팀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지방 소재 대학팀이 14팀으로 그동안 서울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 (수상 현황) 1차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한동대학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팀이 수상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10년간의 지원 및 본선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지원팀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참여 현황>

(단위: 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팀 수	9	10	8	7	7	-	15	10	17	31
본선참가팀 수	9	10	8	7	7		10	9	13	13
입상팀 수	8	6	6	7	7		10	9	13	13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내년에는 입상팀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보다 참여 유인이 적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일괄 편성하여 용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대회 참가를 위한 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팀의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관련 주요 일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 입찰공고*	3. 30.	3. 18	3. 10.	2. 7.
참가신청서 접수	6. 25.	5. 31.	5. 26.	5. 23.
1차 경연대회 자료 제출	7. 23.	7. 8.	7. 7.	7. 19.
2차 본선대회 참가팀 발표	7. 28.	7. 15.	7. 12.	7. 26.
본선대회 참가팀 자료 제출	8. 20.	8. 17.	7. 28.	8. 6.
경연대회 개최	8. 27.	8. 27.	8. 18.	8. 23.

* 최초 공고일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의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정보화 기반확충(정보화)(7032-501)

: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조기구축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보화 기반확충’은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정보 시스템의 기능개선·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6.1%) 감소한 32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정보화 기반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화 기반확충	2,658	3,472	3,259	△213	△6.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2,658	3,472	3,259
·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구축 ISP	-	-	150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68	1,033	675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700	2,249	2,249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190	190	1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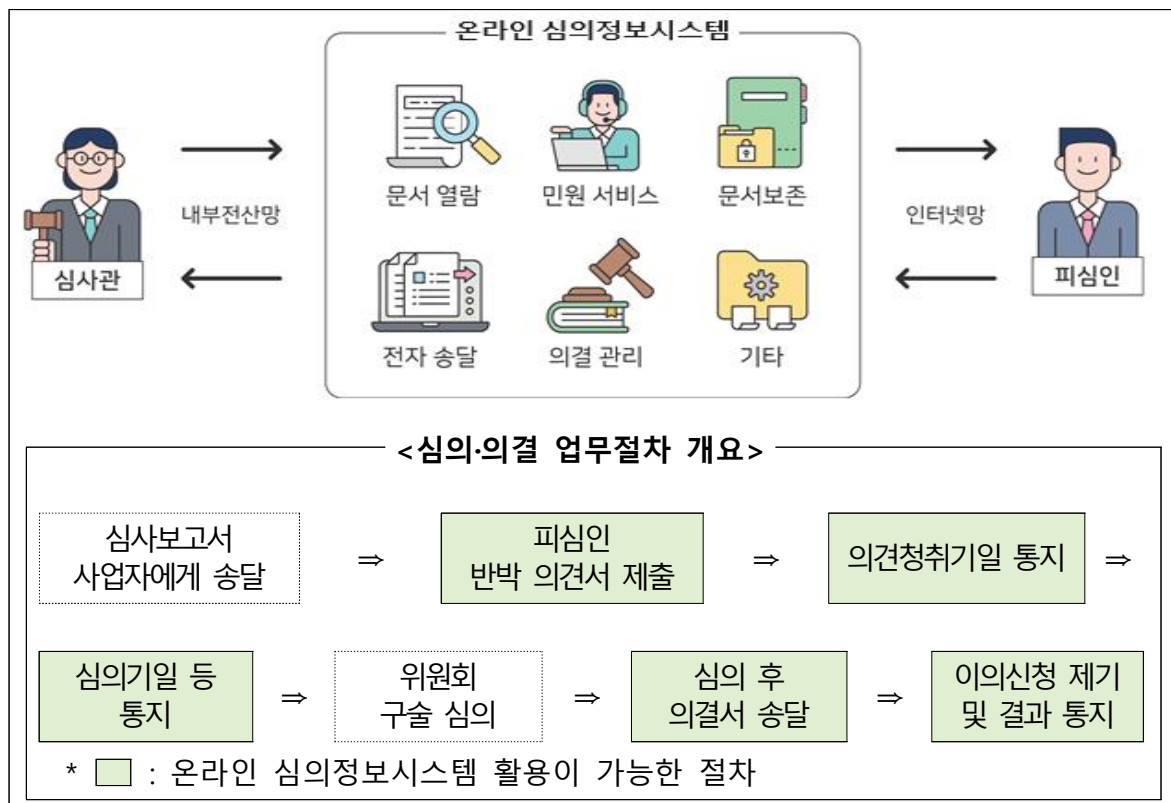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국회는 2024년 1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¹⁸⁾ 등을 신설하고, 해당 조항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7일)로 지정하였음.

□ 정부는 위 법 개정사항 시행에 필요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기본 개요도〉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속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ISP를 거쳐 심의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 구축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이 최소 2년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지연 및 본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찰율은 2019년 31.4%에서 2021년 47.7%로 상승¹⁹⁾하는 등 정보화사업은 사업지연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포털 구축²⁰⁾

19)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12.14.

20)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사업의 지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감액(3,200만원) 한 바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사무처)와 심의·의결(위원회)이 서로 구분되는 행정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과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피심인(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사-심의-의결로 이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정에 관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두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 기능 비교〉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
○ 사건신고 / 진행 - 온라인 사건신고 - 신고사건 진행현황 조회(신고인) - 나의 사건 진행현황 조회(피조사업체) ○ 사건처리정보 열람 - 심의안건 - 의결서 - 심사관전결경고서 - 심의속기록 - 법위반사실조회 - 과징금 처분 현황	○ 문서 제출 등 - 의결서, 재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관리·송달·열람 ○ 심의 정보 안내 - 의견청취기일, 심의기일 통지 등

8.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03)

: 데이터포털 외부 활용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은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4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5,176	1,487	1,487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나.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사업을 시작하였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37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는 구축 완료된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음. 2024년에는 데이터포털 운영을 위해 14억 8,7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14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데이터포털 구축·운영 관련 투입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4,000	4,516	5,176	1,487	1,487

- 당해 사업은 크게 두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첫째 정책목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직원에게 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정책목표는 국민에게 데이터 개방·지능형 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그런데, 두 번째 정책목표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데이터포털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서비스 기능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대국민 데이터포털 주요 기능 및 서비스〉

기능	서비스 내용
통합검색	검색키워드와 유사한 민원사례, 사건데이터 등 정보를 제공하고, 법령관련 키워드에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 탐색
데이터	공정거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파일데이터 52종, 오픈API 361종)
데이터소통	공정거래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및 제안·소통 서비스

기능	서비스 내용
통계	통계정보를 주제별통계, 국가통계, 통계연보로 구분하여 제공 ※ 주제별통계, 통계연보는 통계표에 해당하는 시각화 정보 제공
공정트랜드	공정거래 관련 이슈·트랜드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에 매칭되는 언론기사 제공
민원추천 서비스	민원내용을 50자 이상 입력하면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접수기관, 신고서식, 관련 법령(법조문), 유사민원(우수민원)을 추천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www.fairdata.go.kr)에 관한 이용률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는 웹사이트 운영과 서비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당해 가이드 ‘붙임 4’는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방법을 제시²¹⁾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 후 웹사이트 가이드에 따른 이용률 분석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실제 국민이 어느 정도로 당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근이 사실상 불가²²⁾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대국민 데이터포털 이용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정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 모음 설정’ 기능을 제공

21) Piwik 분석 툴, OWA 분석 툴, 네이버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등의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2) 2024년 11월 1일 현재 검색어 ‘fairdata’로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속이 가능하나,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공정 데이터포털’, ‘데이터포털’등의 검색어로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속이 불가함.

하고 있으나 대국민 데이터포털은 ‘누리집 모음 설정’ 기능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국민이 데이터포털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용성 및 웹사이트 이용의 용이성·편리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대국민 데이터포털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누리집 모음 설정〉



- 한편, 언론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를 수집·제공하고 언론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 「공정트렌드」 기능의 경우 ‘공정위’ 등과 같은 키워드를 포착하여 자동으로 기사와 분석을 제공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무관한 ‘스포츠공정위’ 등이 포함된 기사까지 제공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언론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언론데이터 활용 상세페이지〉

2024년 10월 23일 17시 35분 검색결과 공정위 연관어 분석	공정위 연관 기사 이기흥 체육회장, 정몽규 '절대 골프 의혹'에 청탁금지법 ... KBS 2024-10-22 [국감] 체육회 공정위원장, '축구협 절대골프 의혹' 못매 뉴스핌 2024-10-22 박창범 전 이사, 내년 대한체육회장 출마 경북매일신문 2024-10-22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구조 고착화" 경향신문 2024-10-22
2024년 11월 1일 16시 05분 검색결과 공정위 연관어 분석	공정위 연관 기사 당당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누가 저를 해임할 수 ... KBS 2024-10-31 축구협 노조 "대의원총회 탄핵만이 정몽규 4선 저지 유... 뉴스핌 2024-10-31 축구협회 노조 "정몽규 4선 막으려면 탄핵 말고는 답이 ... 매일신문 2024-10-31 "체육계 사유화 한 이기흥, 당장 3선 연임 행보 멈춰야" 대구신문 2024-10-31

9. 공정거래위원회 청년관련 제도 내실화 필요

(1) 공정거래지원(7031-300)

: 청년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할당 필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 232	△ 16.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811	1,389	1,157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 회의록 작성용역	50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억 6,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2억 6,000만원에 비해 400만원 증액되었음. 최저임금 증액(시간당 9,860원 → 10,030원)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한 증액에 해당함.

□ 청년인턴제는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도록 정함.

□ 그러나,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총 20명의 선발예정인원 중 8명의 담당 예정 업무가 기록물 관리지원에 해당하는 등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 업무
행정·법무(세종)	11명	· 소관부서 행정업무 지원(법 제도관련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업무지원 등 행정업무)
외국어·국제(세종)	1명	· 해외자료·동향 조사, 국제협력 업무·행사지원 등 업무지원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 업무
기록물 관리(세종)	1명	· 기록물 관리 지원(사건·행정 기록물 이관·편철 보조, 기록물 관리, 기록정보 보존 및 소관부서 업무지원 등)
기록물 관리(서울)	2명	
기록물 관리(부산)	2명	
기록물 관리(광주)	1명	
기록물 관리(대전)	1명	
기록물 관리(대구)	1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인턴은 기록물 관리 등의 단순업무 보다는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지원, 심결에 필요한 기초 사례 수집 지원, 해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과 밀접히 관련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청년인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최근의 우려²³⁾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한국경제, 이광식기자, 2024.10.13.

(2) 대외활동 강화(1231-311)

: 2030자문단 역할 정립 필요

- ‘대외활동 강화’는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58.8%) 증가한 6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활동 강화	445	394	626	232	58.8%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445	394	626
· 경쟁관 해외 파견	69	-	86
· 최신 국내외 경쟁 정책정보 번역	60	59	46
· CP제도 운영	46	46	46
· 서울국제경쟁포럼	122	-	210
· ICN 부담금	4	4	4
· ASEAN 및 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68	74	25
· 공정거래정책 학술심포지엄	76	80	80
· 경쟁당국수장간회의	-	64	62
· 2030자문단 운영	-	67	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내역사업 ‘2030자문단 운영’은 2024년 신설된 사업으로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은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과 동일한 수준임.

□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은 현재 총 19명²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분과 7명, 기업거래분과 5명, 소비자분과 7명으로 분과를 구분하여 운영중임.

〈2024년 2030자문단 제안에 따른 정책과제 목록〉

제목	정책과제
청년 소비자 경제역량 함양	청년층의 이용·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헬스장·필라테스)에 초점을 맞추어 유튜브·인스타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
청년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제도 홍보	청년 창업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공다방)을 통해 가맹본부·가맹점 창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제공
온라인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선	대리인도 해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SNS 뒷광고 점검 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블로그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개선(하단→최상단)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법제화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대리점 관련 실태조사 등 실시 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기술침해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공정위 조치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	▲반려동물 등록방법 간소화(예: 비문, 홍채 등) ▲의료기기 수리업자 중요부품 사용규제 개선추진
웨딩산업 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 마련	자문단 피해사례 조사결과(4.26) 등을 참고하여 연구용역 실시 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24) 최초 구성시 21명이었으나, 2명이 사임하였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제안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청년과 관련한 정책과제(청년 소비자 경제역량 함양, 청년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제도 홍보) 보다는 ‘온라인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선’, ‘SNS 뒷광고 점검 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법제화’ 등 일반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많아 청년정책²⁵⁾ 과제 발굴 및 제안이 다소 부족함.

□ 둘째, ‘기술침해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은 2024년 2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안에 해당함. 또한 ‘웨딩산업 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 마련’은 2024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²⁶⁾에 반영된 사안으로, 2030자문단이 그 설립 목적 및 역할²⁷⁾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25)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6) 기획재정부, 「청년 고용 및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육성」, 2024.3.13.

27)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자문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목적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과제 수립에 있어서도 정량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년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30자문단의 활동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총액인건비성 인건비(7001-100)

: 청년보좌역 역할 정립 필요

□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200만원 (4.7%) 증가한 561억 5,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51,419	53,650	56,152	2,502	4.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비목별 분류(합계)	51,419	53,650	56,152
· 보수(110-01)	50,654	52,820	55,157
· 기타직보수(110-02)	419	431	572
· 연가보상비(110-05)	346	399	423

□ ‘기타직보수(110-02)’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28)에 근거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을 채용하여 운영함.

28)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는 청년보좌역의 업무를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③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 기구의 운영 지원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해 공고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에는 청년보좌역의 담당예정업무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청년보좌역	○ 간부회의, 소속 부처의 정책관련 정부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청년 세대의 인식과 요구 전달 ○ 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청년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보좌역 활동결과보고”에 따르면 공정위 주요정책 등에 대한 “홍보”가 청년보좌역의 주요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어, 청년보좌역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와 정책을 청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 즉, 청년보좌역의 주요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청년에 알려 정책인지도를 상향하는 산출(Output)의 측면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입(Input)의 측면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 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5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됨.
- 2025년도 수입 예산안은 정부출연금 536억 9,600만원과 자체수입 3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67억 4,000만원이고, 지출 예산안은 인건비 379억 5,000만원, 사업비 128억 8,500만원, 운영비 45억 1,700만원, 예비비 1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67억 4,000만원이며,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결혼서비스 시장 가격조사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임.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53,499	56,259	56,740	481	0.9
정부출연금	50,853	52,842	53,696	854	1.6
자체수입	2,646	3,417	3,044	△373	△10.9
□ 지 출	52,892	56,259	56,740	481	0.9
인건비	37,236	36,559	37,950	1,391	3.8
사업비	10,384	13,840	12,885	△955	△6.9
운영비	5,272	4,509	4,517	8	0.2
예비비	-	1,351	1,388	37	2.7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1)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소비자정책(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법령과 제도의 소비자 지향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며, 기업의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이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요구안	조정(B)	(B-A)	(B-A)/A
▪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074	1,600	1,600	526	49.0
- 정책연구	569	637	637	68	12.0
- 거래조사	321	802	802	481	149.8
- 대외협력	184	161	161	△23	△12.5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 영향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혼인율·출산을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혼인 문제 개선책을 포함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은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을 추진하기로 함.

○ 이는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결혼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결혼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정책 방향	취·창업 활성화			소비자 만족 제고			성장 기반 마련		
	취·창업 활성화			소비자 만족 제고			성장 기반 마련		
웨딩뷰티	교육훈련 강화			공정거래 확립			법·제도 정비		
	· 뷰티 창업교육 확대 · 뷰티 창업정보 제공 강화 · 웨딩분야 자격체계 마련			· 결혼 가격정보 공개 강화(소비자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공정위)			· 결혼 진흥·발전 법률 제정 · 결혼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뷰티 통계 세분화		
	창업부담 완화			공공예식 활성화			방한 관광 확대		
	· 공유미용실 제도화 · 피부·네일 간이과세 적용 · 웨딩 1인 창조기업 지원			· 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 · 공공예식장 모델 다양화			· K-뷰티 체험·홍보관 확충 ·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		

(자료: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 예산으로 거래조사(세항) 사업에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5억 2,800만원을, 정책연구(세항) 사업에 결혼서비스 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거래조사 사업의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 정보제공 예산안을 살펴보면 결혼 서비스 분야 용역조사 4억 800만원, 가격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 편성 내용>

사업	세부 편성 내용
결혼서비스 분야 용역조사	○ 4억800만원 - 현장 조사원 수당: 3억 5,200만원(176명×0.5백만원×4분기) - 조사원 대상 교육: 600만원(200만원×3회) - 조사 컨설팅 및 자문비: 2,000만원(1,000만원×2회)
가격 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 1억 2,000만원 -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구현: 5,000만원 - 모바일 기기 최적화를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개선: 7,000만원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에 서울 및 6대 광역시 172개 음식점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790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도에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음식서비스 412개 업체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로 계획 중으로, 시기별 음식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가격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19) 및 가격 모니터링('25) 비교>

구분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19년)	결혼서비스 가격 모니터링('25년 예정)
편성 예산	85백만원	408백만원
조사 방법	▪ 소비자설문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 현장 조사원을 파견해 가격정보를 수집(176명 이상 규모) ▪ 소비자, 사업자, 업계·학계 설문조사
조사 대상	▪ 서울 및 6대 광역시 음식점 홈페이지	▪ 전국 예식서비스 업체 412곳 및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업체 200곳
조사 주기	▪ 일회성	▪ 분기별 정기 조사
조사 범위	▪ 예식서비스 분야(표준약관, 거래조건)	▪ 예식서비스 분야(대관비·식대 등 서비스 정가, 견적가, 부당거래 조건) ▪ 스톱메분야(드레스·메이크업 등의 패키지 견적가, 부당거래 조건)
내용	▪ (소비자피해 실태) 피해 유형 분석 ▪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사업자 기본 정보, 상품 구성 등 홈페이지 모니터링 ▪ (소비자 만족도 조사) 예식서비스 이용, 피해경험 등 만족도 조사	▪ (결혼정보 가격 데이터 수집) 예식서비스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분석 ▪ (데이터 검증) 조사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교차 검증 수행 ▪ (조사 품목 정비) 서비스 항목마다 추가되는 옵션 가격, 할인율 등 실태조사

□ 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2024년 내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26년도 부터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 서비스 이용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웨딩·뷰티 분야 주요과제 추진일정 >

분야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웨딩	· ‘참가격’ 플랫폼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게시	공정위 등	‘25~
	· 결혼 서비스 체감가격, 선택 다양성 등 정기 조사·공개	공정위	‘25~
	·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방안 마련	기재부	‘24.4Q
뷰티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4.3Q
	·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24.2Q
	· 결혼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정기 실시	여가부	‘26~

(자료: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 동 사업의 최종적 목적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인바, 가격표시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및 거래조건이 정확히 제공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참가격²⁹⁾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가격정보는 지역별 세탁, 숙박, 이용, 미용, 목욕 품목의 지역별 평균금액에 불과한데 결혼 서비스 예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예식일, 보증인원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범위가 크며, 스토메(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분야의 경우 품목별 결합 여부, 품질, 선택사항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고, 업체별 가격이 상이한 특성이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참가격 내 전

29)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rice.go.kr), 500여개 판매점의 가격정보 데이터를 격주 조사하여 곡물·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 54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와 시·도 교육청(학원/교습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받아 제공하고 있음.

용메뉴를 신설하고 표준형, 고급형, 실속형으로 구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나, 결혼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비교 및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조사·정보제공 범위를 더욱 철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사업은 소비자정보 및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관 사업의 대국민 전달력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AI기반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종료로 전년 대비 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5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요구안	조정(B)	(B-A)	(B-A)/A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567	2,568	2,568	△999	△28.0
- 소비자정보 및 역량강화	636	940	940	304	47.8
- 소비자원 정보화	2,861	1,523	1,523	△1,338	△46.8
- 소비자홍보	70	105	105	35	50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웹을 통한 쌍방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채팅상담 시스템(소망챗 1:1 상담)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임.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2022.12. 사업 선정 및 시스템 구축	[2단계] ~2023.6. 시스템의 기능화 및 테스트 운영	[3단계] ~2024.12.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개시
▶국민 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민원 처리 통합플랫폼 구축 - ISP 추진 계획 수립 ▶소비자 맞춤형 채팅 상담 시스템 구축	▶우수기관 벤치마킹 ▶지식DB 확대 (표준답변, 사용어구 등) ▶모의채팅 실시(3회) - KCA국민소통단 등 82명 ▶서비스 시연회	▶서비스 개시(7.3.) - 보도자료 배포 ▶상담자 증원(4명→7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DB 확대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시스템 구축)		2023년		2024년 (시스템 유지보수)		2025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모바일 채팅 상담 서비스	200	200	-	-	20	20	20

(자료: 한국소비자원)

※ '22년도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사업(200백만원)'은 '인공지능 기반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1,056백만원)' 사업의 일부 과업

□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구축은 2022년도에 완료되어 2025년도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인 2,0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모바일 채팅상담 홍보 예산으로는 2023년도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별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음.

□ 채팅상담 서비스는 평일 09:30부터 17:00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분야 2명, 자동차분야 2명, 일반분야 3명 총 7명의 담당자가 소비

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및 답변 관리를 위하여 2명의 팀장이 서비스 사업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채팅상담 접수건수 및 담당자 1인당 상담건수가 분기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상담건수는 2024년도에 분야별 상담인원 1인씩, 총 3인이 증원되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모바일 채팅상담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합계
총 건수(비율)	1,850(26.3)	1,783(25.4)	1,718(24.5)	1,669(23.8)	7,020(100.0)
전월 대비 증감율	-	▼3.6 (0.9%p)	▼3.6 (0.9%p)	▼2.9 (0.7%p)	-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모바일 채팅상담 1인당 1일평균 상담 건수〉

(단위: 건, %)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일평균
건수	7.5	7.0	4.0	3.9	5.6
전월 대비 증감율	-	▼6.7	▼42.9	▼2.5	-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 상담시간의 경우 분야별로 1건당 자동차 13.9분, 일반 12.3분, 금융·보험 11.5분이 소요되며 채팅 상담 후 상담장 정리 및 저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담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1건당 약 15~20분으로서 담당자 1인당 채팅 서비스 상담시간은 하루 최대 78분에 불

과한 것으로 보임.

〈모바일 채팅상담 1건당 평균 상담시간〉

(단위: 분)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평균 상담시간
일반	12.4	11.5	12.8	12.3	12.3
금융·보험	10.8	11.0	11.7	12.6	11.5
자동차	14.1	13.6	12.3	15.5	13.9
평균	12.4	11.5	12.8	12.4	12.3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 소비자 상담에서의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라는 목적 및 투입 예산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구축된 채팅상담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이용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채팅상담 서비스의 홍보 강화, 채팅상담 이용자의 의견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 관련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5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수탁사업비로 편성됨.
- ☐ 2025년도 수입 예산안은 정부출연금 127억 5,700만원과 자체수입 6억 900만원, 수탁사업비 1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5억 7,200만원이고, 지출 예산안은 인건비 85억 400만원, 운영비 26억9,800만원, 사업비 21억 6,400만원, 수탁사업비 1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5억 7,200만원이며,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임.

<2025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12,631	14,233	14,572	339	2.4
정부출연금	11,657	11,742	12,757	1,015	8.6
자체수입	974	2,491	1,815	△676	△27.1
□ 지 출	12,479	14,233	14,572	339	2.4
인건비	7,032	7,622	8,504	882	11.6
운영비	2,531	2,591	2,698	107	4.1
사업비	2,146	2,798	2,164	△634	△22.7
수탁사업비	770	1,222	1,206	△16	△1.3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분쟁조정 사업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건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등 소요경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분쟁조정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요구안	조정(B)	(B-A)	(B-A)/A
▪ 분쟁조정	637	637	707	70	11.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2025년도 증액 예산액 산출내역>

- 사건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24%)에 따른 공공요금 등 소요경비 48백만원
- 상임위원 도입에 따른 소요경비 14백만원
-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8백만원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분쟁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³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 분쟁조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분쟁조정의 목적 및 효력>

분쟁조정이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인이 도움을 주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조서 작성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별도의 소제기 없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개분야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구분	근거법률	조정대상	분쟁유형
공정거래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 관련 사업자 분쟁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 거래 분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 예)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미제공, 가맹금반환청구, 계약이행청구,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 업거래 분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 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전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
약관 분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예)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약관 등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을 전가시키는 약관 등
대리점 분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예)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분쟁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개정(2023. 8. 8.)으로 2024년부터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규정>

구분	내용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73조제2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가맹사업 거래 (가맹사업법 제17조제4항)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4조제3항)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제2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약관 (약관법 제24조제2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대리점 (대리점법 제14조제4항)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 상임위원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인의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임위원 1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해당 상임위원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위원장 1명이 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시기>

구 분	공정거래	대규모 유통	약관	하도급	대리점	가맹
시행 시기	'24. 2. 9.	'24. 3. 1.	'24. 9. 12.	'25. 7. 1.	'25. 12. 23.	'26. 11. 9.
적용 기준	(공정거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대규모유통·약관·하도급·대리점·가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 관련 6개 법률에는 협의회 위원들의 겸임 조항이 없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의 겸임은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73조제4항)	○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7년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맹사업 거래 (가맹사업법 제17조제3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4조제7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제4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약관 (약관법 제24조제5항)	○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리점 (대리점법 제14조제3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또한 6개 분쟁조정협의회는 연간 약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 공정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건수는 1,571건으로 1명의 상임위원이 처리하기에는 조정사건이 과중하여 적시성 있고 심도깊은 안건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계 [A+B+C]	증가율	성립 ³¹⁾ [A]	불성립 ³²⁾ [B]	종결 ³³⁾ [C]	
2022년	소계	2,868	△2	1,202	339	1,327	78
	공정	1,119	6	423	148	548	74
	가맹	513	6	230	54	229	81
	하도급	853	△1	361	95	397	79
	유통	34	36	21	1	12	95
	약관	271	△37	141	27	103	84
	대리점	78	△7	26	14	38	65
2023년	소계	3,151	10	1,278	350	1,523	79
	공정	1,267	13	475	135	657	78
	가맹	575	12	263	62	250	81
	하도급	929	9	354	100	475	78
	유통	26	△24	13	1	12	93
	약관	278	3	137	48	93	74
	대리점	76	△3	36	4	36	90
2024년 9월	소계	2,941	24	1,107	363	1,471	75
	공정	1,192	22	463	113	616	80
	가맹	460	12	197	75	188	72
	하도급	885	25	305	89	491	77
	유통	20	11	12	3	5	80
	약관	321	74	103	76	142	58
	대리점	63	△7	27	7	29	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신속
성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1)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32)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33)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109
02)6788-5114
02)6788-5115